광고교육원 운영규정

재정 2014. 5.30 시행 2014. 5.30 개정 2020.12.30 시행 2020.12.31 개정 2022. 1.14 시행 2022. 1.20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시설의 명칭) 교육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원"이라 칭하고 영어로는 "KOBACO ADVERTISING ACADEMY"라 한다.
- 제3조(시설의 설립목적) 교육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및 공사 정관에 따라 방송·광고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광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광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민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시설의 위치) 교육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한국광고문화회관에 설치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사업) 교육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0.>

- 1. 광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2. 광고학계와 광고업계의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사업
- 3. 지역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광고교육 사업
- 4. 일반 국민들의 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 5. 광고의 국제화 지원을 위한 사업
- 6.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보역량 강화를 위한 광고홍보 교육 사업
- 7.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제2장 과정개설 및 운영

- 제6조(과정) ①교육원은 설립목적과 교육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 ②교육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매사업년도 2월까지 연간교육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개정 2014.5.30>
 - ③원장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연간 교육 실시결과 및 집행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④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6조의2(위원회) ①교육원은 과정운영에 필요한 수상, 포상, 우수자

선발 등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고, 모든 위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4.]

- 제7조(정원) ①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의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
 - ②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정원 외에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1. 공사에 재직하는 직원
 - 2. 원장이 인정하는 수강 희망자
- 제8조(지원절차) 교육원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공지된 기간 과 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선발과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9조(선발) ①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시에는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수강생을 선발한다.
 - ②수강생 선발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10조(등록) 합격자는 소정의 수강료 및 필요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강료) ①교육원의 과정별 수강료는 원장이 정한다.
 - ②교육원은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한 수강생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강료 반환 기준과 금액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13조(합격취소) 합격한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1. 수강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학사관리

- 제14조(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주간 및 야간에 실시한다.
- 제15조(교육기간) 교육원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른다.
- 제16조(성적관리) 교육원의 성적관리 및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채점기준, 평가과목수는 과정별 기본계획에 따른다.
- 제17조(수료) ①교육원의 수료인정은 과정별 수료기준을 충족하여야만

- 하며, 그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②수료 인정 시기는 해당 과정의 종료일자로 한다.
- 제18조(우수수료) ①수료인원의 일정범위에서 우수수료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우수수료자로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②우수수료자의 범위, 특전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18조의2(강제퇴원) 강사, 타 수강생, 광고교육원 직원 등에게 교육운 영 및 관리 등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원장은 해당 수강생에 대해 교육원의 전 교육과정 수강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퇴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30.]

제4장 교육 사업

- 제19조(교육사업) ①교육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고전문가과정, 사회교육과정, 산학협동과정, 지역광고교육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원장은 교육과정명, 과정개설목 적, 소요 예산 등을 명시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과정) ①"광고전문가과정"이란 전문광고인력 양성을 위하여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 ②"사회교육과정"이란 일반 국민들의 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 해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 ③"산학협동과정"이란 대학 광고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고교육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 ④ "지역광고교육과정"이란 지역 광고인력의 양성을 통한 지역광고산 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 ⑤전항의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5장 IAA DIPLOMA

- 제21조(IAA DIPLOMA 과정운영) ①교육원은 국제광고협회 (International Advertising Association, 이하 "IAA"라 한다)의 인가 교육기관으로서 IAA DIPLOMA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교육원은 IAA DIPLOMA 과정의 운영을 위해 매 6년마다 IAA의 인가를 받으며, 인가갱신을 위한 IAA본부의 실사에 응한다.
- 제22조(IAA DIPLOMA 수여) IAA 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IAA DIPLOMA"를 수여한다.

제6장 조 직

제23조(조직) 교육원은 광고교육 담당부서가 운영하며, 원장은 광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4조(교육담당자) 원장은 교육과정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제25조(강사) ①교육원의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 ②위촉된 강사는 지정된 기일과 시간을 엄수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 ③강사에게 소정의 강사료 및 거마비, 교재원고료, 시험출제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소관본부장이 정한다.
- 제26조(평생교육사) ①교육원은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해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②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자문위원회

- 제27조(구성) ①교육원의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 및 업계전문가와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학계인사, 업계인사, 공사 임직원 등 7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사의 교육원 소관본부장이 맡는다. 이때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1.14.>
 - 1. 대학, 공공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2. 전 · 현직 미디어 · 광고업계 종사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3. 기타 광고교육에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각 계의 전문가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위원장 등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④지사 광고교육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지사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기 중 강사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 제28조(운영) ①위원회는 임기 중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원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②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임 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교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문할 수 있다.
 - 1. 광고교육원 연간교육계획 및 과정별 교육계획
 - 2. 교육과정 커리큘럼 조정 및 우수강사 추천
 -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4. 광고교육원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

- 5. 광고교육생 취업대책 및 인턴십 운영전반 등에 대한 사항
- 6. 기타 광고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
-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담당 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 제29조(시설) ①교육원의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는 원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 ②원장은 시설 및 기자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제9장 보 칙

- 제30조(시행세칙) 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3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 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30.>

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0.>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4.>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1.14.>

청렴서약서

직위 : 광고교육원 〇〇〇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 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